

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31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8. 5. 7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명예시민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여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기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대전광역시장이 수여하고 사후에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2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2008. 4. 18. ~ 4. 28. / 접수 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비회기중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이 어려운 경우 대전광역시장이 수여하고 사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명예시민증 수여) ①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(이하 “명예시민증”이라 한다)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 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 <p><u><단서 신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명예시민증 수여) ①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다만, 비회기중으로 대전광역시의 회의 의결이 어려운 경우 대전광 역시장이 수여하고 사후 대전광역 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